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8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인증취득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마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,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

(안 제6조~제7조).

바. 인증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
사.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.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에는 법인.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.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-3396-8157 FAX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인증”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 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인증취득 권장 건축물)**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
2.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
3.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

**제5조(인증취득에 대한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교육 및 홍보 등)**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2.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

3.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,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조금 지원)**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사후관리)**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(표창)**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

신청자	시설(업체)명			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주 소				대표자 성명	
	실 무 담 당 자	성 명		부 서		직 위
Tel			Fax		E-mail	

인증 대상

신청 대상	지역(시설)명					
	소재지					
	면적(연장)		m <sup>2</sup>		인증수수료	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인증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<첨부서류>

1.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
2.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